

인천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0가단2754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태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웅

변 론 종 결 2021. 11. 16.

판 결 선 고 2022. 3. 8.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C와 망 D 사이의 별지 기재 각 일자 금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D의 처로 D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를 기망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포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17. 11. 9.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유죄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고합416호)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D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피고 B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9,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이 2020. 6. 8. 피고 B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각 일자에 각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53,642,819원을 증여하였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그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1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은 제소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참조).

한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1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은
2015. 4. 3.부터 2016. 6. 9.까지 90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가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날은 2021. 7. 2.로, 위 각 증여계약이 있는 날로부터 모두 5년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

별 지

순번	날짜	금액(원)	주요
1	2015. 4. 3.	10,800,000	연습아버지 화이팅
2	2015. 4. 9.	10,111,110	연습아버지
3	2015. 4. 13.	5,000,000	연습아버지
4	2015. 4. 14.	5,200,000	연습아버지
5	2015. 4. 15.	26,000,000	연습아버지 화이팅
6	2015. 4. 16.	19,000,000	연습아버지
7	2015. 4. 16.	19,000,000	연습아버지
8	2015. 4. 21.	4,506,888	연습아버지
9	2015. 4. 22.	30,000,000	연습아버지 사랑해
10	2015. 4. 23.	26,000,000	연습아버지 사랑해
11	2015. 4. 24.	26,000,000	연습비주스파감사
12	2015. 4. 27.	10,000,000	연습아버지 사랑해
13	2015. 5. 1.	10,000,000	연습아버지
14	2015. 5. 2.	5,000,000	연습아버지 사랑해
15	2015. 5. 4.	15,000,000	연습아버지 사랑해
16	2015. 5. 4.	5,700,000	연습아버지 사랑해
17	2015. 5. 6.	6,000,000	연습아버지 사랑
18	2015. 5. 8.	26,000,000	연습아버지
19	2015. 5. 12.	1,697,725	연습아버지 사랑
20	2015. 5. 15.	28,800,000	연습아버지
21	2015. 5. 19.	10,000,000	
22	2015. 5. 20.	17,800,000	
23	2015. 5. 22.	10,000,000	
24	2015. 5. 22.	18,000,000	연습아버지 사랑해
25	2015. 6. 2.	4,200,000	연습아버지 사랑해
26	2015. 6. 2.	5,800,000	
27	2015. 6. 2.	5,100,000	
28	2015. 6. 3.	2,933,096	
29	2015. 6. 3.	10,000,000	연습아버지
30	2015. 6. 4.	13,000,000	
31	2015. 6. 8.	20,000,000	
32	2015. 6. 13.	1,100,000	
33	2015. 6. 15.	1,200,000	
34	2015. 6. 18.	2,300,000	
35	2015. 6. 19.	7,700,000	
36	2015. 6. 22.	5,500,000	
37	2015. 6. 23.	5,000,000	
38	2015. 6. 25.	1,200,000	
39	2015. 7. 2.	2,100,000	연습아버지
40	2015. 7. 2.	2,834,000	
41	2015. 7. 3.	2,600,000	
42	2015. 7. 6.	5,000,000	
43	2015. 7. 8.	3,600,000	
44	2015. 7. 19.	15,000,000	
45	2015. 7. 20.	4,000,000	
46	2015. 7. 22.	19,220,000	
47	2015. 8. 6.	10,000,000	
48	2015. 8. 7.	15,000,000	
49	2015. 8. 10.	1,000,000	

50	2015. 8. 12.	10,000,000	
51	2015. 8. 12.	10,000,000	
52	2015. 8. 17.	10,000,000	
53	2015. 8. 19.	4,000,000	
54	2015. 8. 20.	5,000,000	
55	2015. 8. 26.	5,000,000	
56	2015. 9. 9.	15,100,000	
57	2015. 9. 9.	2,000,000	
58	2015. 10. 14.	4,000,000	
59	2015. 10. 17.	2,300,000	
60	2015. 10. 19.	6,000,000	
61	2015. 10. 19.	6,000,000	
62	2015. 10. 19.	14,000,000	
63	2015. 10. 20.	7,000,000	
64	2015. 10. 23.	1,800,000	
65	2015. 11. 2.	2,000,000	
66	2015. 11. 3.	10,000,000	
67	2015. 11. 4.	3,000,000	
68	2015. 11. 4.	4,500,000	
69	2015. 11. 4.	4,500,000	
70	2015. 12. 10.	15,000,000	
71	2015. 12. 15.	4,600,000	
72	2015. 12. 15.	3,000,000	
73	2015. 12. 18.	2,340,000	
74	2015. 12. 22.	10,000,000	
75	2015. 12. 23.	1,500,000	
76	2016. 1. 2.	10,000,000	
77	2016. 1. 4.	5,200,000	
78	2016. 1. 4.	4,000,000	
79	2016. 1. 11.	10,000,000	
80	2016. 1. 12.	1,300,000	
81	2016. 1. 12.	1,300,000	
82	2016. 2. 2.	1,100,000	
83	2016. 2. 5.	5,000,000	
84	2016. 3. 21.	1,000,000	
85	2016. 3. 29.	3,000,000	
86	2016. 3. 29.	5,000,000	
87	2016. 3. 31.	15,100,000	
88	2016. 4. 20.	1,000,000	
89	2016. 4. 27.	2,000,000	
90	2016. 6. 9.	15,000,000	
합 계		753,642,819	

